

고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 (안)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479 |
|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1998. 6. 10.

제 출 자 : 고 성 군 수

1. 개정이유

- 공영개발사업설치 및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91년 3월23일 개정이후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내용을 변경,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시 고성군의회 의결을 얻도록함(안 제17조)

3. 근거법령

- 지방공기업법, 경상남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

4. 입법예고 : 입법예고 불필요

5. 본 문

고성군조례 제 호

고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 (안)

고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중 "군수의 승인"을 "예산으로 고성군의회 의결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조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제17조 (중요자산의 취득및 처분)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<u>군수의 승인을 얻어</u>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| <p>제17조 (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) - - - - - - - - - - <u>예산으로 고성군의회 의결을</u> 얻어 - - - - - - - - - -</p> |